



언론 사람

언론중재위원회 NEWS

/ 역사 속 언론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 조보(2)

/ 위원회 뉴스

2015년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국정감사 수감

2015년도 임시총회 개최

2015
10

Vol. 184



향기의 지능

향기의 지능지수는 사람보다 높다.
눈빛이 천리天理에 밝고 산을 들어 올려도
보지 않고 손대지 않고도 향기는
천리千里 밖 마음속까지 젖어든다.

꽃의 겨드랑이에서 향기를 맡는다.
황제가 커튼 너머 체취로 왕비를 간택하듯
향기는 마음보다 먼저 보고
재빨리 사랑을 느낀다.

아름다움이 향기다.
향기의 집은 마음속에 있다.
마음이 사랑을 품고 너에게로 가서
세상을 움직이므로

웃어야 향기가 나온다.
저절로 웃어야 향기가 퍼진다.
감옥에서 땅굴에서
무덤에 들 때까지 웃어야 스며든다.

슬픔의 눈물이 향기의 진액이다.
진짜라야 눈물을 퍼 올릴 수 있고
하늘을 움직인다.
하늘은 위에 있고 사람보다 높다.

이운룡

-
- 1964년 <현대문학> 시 추천 등단, <월간문학> 평론 당선
 - 전북문화관 관장, 한국문협 · 한국현대시협 고문
 - 조연현문학상 수상 외 다수
 - 『물빛의 눈』 외 14권, 평론집 『시와 역사현실의 명암』 외 10권
-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피해 구제 상담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조정·중재신청과 법적 절차를 포함한 종합적 피해구제 방안을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언론분쟁의 조정·중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정정·반론·추후 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조정·중재를 통해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시정권고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언론사에 서면으로 시정을 권고합니다.



선거기사 심의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종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선거기사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에 보도된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ADR 전문교육 & 언론피해 구제 및 예방교육

조정·중재를 비롯한 소송 이외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에 관한 전문교육과 언론피해 구제 및 예방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pac.or.kr

pacblog.kr

twitter.com/pac_news

언론중재 Eye-Net people.pac.or.kr

facebook.com/pacnews

Contents

2015 October Vol.184

04 역사 속 언론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 조보 (2)

06 문화가 산책 음악가들의 아르바이트

07 古典名句 화복무문禍福無門, 유인소소惟人所召

08 위원단상 독서치료와 언론중재위원

09 신 동의보감 당뇨와 여주

10 상담노트 익명보도의 딜레마

11 조정후기 충분한 사실 확인과 반론권 보장은 필수

12 위원회 뉴스·위원동정

14 조정중재사례

15 독자마당

발행인 박용상

편집인 권우동

발행일 2015년 10월 1일

등록 2009년 12월 7일 서울중, 라00325

발행처 언론중재위원회(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
TEL 02-397-3114 FAX 02-397-3069

구독신청 홍보팀 TEL 02-397-3082~4

편집·디자인 (주)잉카커뮤니케이션즈 TEL 02-548-1008

※ 본지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 기사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

조보 (2)

(9월호에 이어)

5. 조보의 발행 시기

『효종실록』에 보면, “조보를 연일 보건대,”라는 기사가, 『현종실록』에는 “날마다 양사가 논한 사실이 조보에 기재되어,”라는 기사가 있다. 실록의 기사대로라면 조보가 매일 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발행 시간은 오전이었다. 여기에는 전날 저녁부터 밤 사이 임금의 명령과 당일 아침의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는 저녁에 발행되는 경우도 있었다. 제호는 붙여 있지 않으며, 기사의 제목도 없다. 다만 각 부분의 첫 머리에 날짜가 쓰여 있고, 각 기사들은 사건의 처리 순서에 따라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

조보의 발행 목적은 군주와 조정의 공식 행정 사항을 알리는 것이었다. 따라서 왕실 및 중앙 관서의 경우는 기별군사를 통하여 즉시 전달되었다. 그러나 관직에 제수된 사람이 그 사실도 모르고 낙향하거나, 지방 및 하부 관청에서는 몇 일본씩 모아서 역참 또는 경주인을 통하여 배포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정보의 즉시성이 떨어지고 정부의 공시 사항이나 지시, 전달 사항이 신속하게 처리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종이가 부족하였던 이유도 있지만, 조보의 중요성이 인식되지 못하였거나, 전달 과정이 체계적이지 못하였던 현실적 한계 때문이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분발’과 같은 속보의 형태가 있었으나, 근본적인 문제점은 해결되지 못하였다.

6. 읽기 어려운 글씨와 모양

조보는 인쇄에 의해서 대량 생산된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 소속된 기별서리들이 승정원에서 와서 붓으로 작성해 간 필사본의 형태였다. 조선시대 공문서가 한자로 작성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자를 주로 쓰되,

이두를 보조적으로 사용하였다. 서체는 매우 독특하여 기별 글씨라 불리는 흘림체였다. 일반적으로 이를 ‘기별초’ 혹은 ‘조보체’라고 하였다. 매우 거칠게 썼기 때문에, 초서체의 다른 고문서보다도 훨씬 알아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조보를 베껴 쓰는 서리에게는 정확한 필체가 요구되었고, 이와 더불어 집중력과 순발력을 필요로 하였다. 임무가 막중하고 일정한 우대가 주어진 만큼 근무를 소홀히 했을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엄중한 문책도 받았다. 가장 대표적인 문책은 필체를 잘못 썼을 경우에 받았던 탄핵이었다.

그러나 모든 조보가 흘림체로 쓰인 것만은 아니었고, 특별한 경우에는 정서되기도 하였다. 국가 문서를 보존하는 왕실도서관인 규장각에서는 조보를 정서하는 기별서리 3인이 배치되었고, 이들로 하여금 보존용 ‘정서조보’를 만들도록 하였다. 그리고 세자나 세손의 교육기관(시강원과 강서원)에도 정서 기별서리가 있어서 정서조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보는 어떤 모양이었을까?

1890년 조선 주재 프랑스 공사관의 서기관 겸 통역관으로 1년 10개월 여 근무했던 모리스 꾸랑은 자신의 저서인 『한국서지』에 다음과 같이 조보를 설명했다.

“한경보(漢京報), 조보(朝報) 또는 기별(寄別)이라고 한다. (가)폭은 35cm, 길이가 일정치 않은 낱장의 종이에 초서체로 쓰여졌다. (나)국왕 측근에 상주하는 관리가 왕의 명령을 기록하여 궁내에 있는 승정원에 보낸다. 그러면 (다)각 관청 및 고위 관리들이 파견한 서리들이 승정원 서리에게 (라)구독료를 지불한 후 왕실 관리가 가져온 기사가 도착하면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아니하고 필사한다. (마)각 관청과 고위 관리들은 원본을 가지며 승정원 서리가 만든 사본(寫本)

은 그 밖의 관리들과 한 달에 한 꾸러미 반을 조보 (바)구독료를 지불한 민간인들에게 계속 배달하는 기별군사에게 넘겨준다.”

(가)부분은 조보 형태에 대한 표현이다. 폭이 35cm 내외이고, 길이는 일정치 않다고 하였는데, 현존하는 대부분의 조보 형태와 일치한다. (나)·(다)·(라)부분은 국왕 측근 신하가 기사를 작성하여 승정원에 보내면, 각 관청과 대신이 보낸 서리들이 베껴 갖고, 일정한 구독료를 냈다는 표현이다. 측근 신하라는 표현은 조보를 작성하였던 주서를 의미한다. ‘왕의 명령’이란 각종 상소나 인사 관련 사항 중 왕이 답한 것을 말한다. 그런데 구독료를 냈다는 (라)의 표현은, 1894년 갑오경장 당시 승정원이 승선방으로 개칭되면서, 승선방의 관보국에서 ‘조보’대신 발행한 ‘관보’를 말한 것이다. 즉 관보와 조보를 혼동한 것으로 이해된다.

7. 어떤 내용이 수록되었을까?

조보는 일종의 관보 기능을 가지고 국왕의 조칙을 비롯하여 관리의 건의에 대한 대답, 관리의 임명과 면직 등의 인사 내용과 지방관의 보고 등 다양한 기사가 수록되어 있다. 유교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던 자연 재해 기사 역시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정리하면 ① 국왕의 명령과 지시를 포함하는 전교, ② 국왕의 동정, 건강 상태, 경연, 기타 국가 행사, 예컨대 과거, 때로는 관리의 사망 사실, ③ 국왕의 비답, ④ 국왕이 관민에게 내리는 회유문인 윤음(綸音), ⑤ 관리의 임명과 면직, 이동, 승급 등 모든 인사 관계 내용, ⑥ 자연 재해 및 기이한 사실, ⑦ 당면 정책 및 중요 문제에 대한 유생과 관료들의 건의인 소장, 그리고 중앙 및 각 지방에서 왕에게 올리는 각종의 보고서와 장계의 내용 등이다.

한편 임금의 직접 본 상소는 수록되었으나, 살펴보지 않은 상소는 제외되었다. 군주의 동정과 건강 여부, 세자빈의 간택 날짜, 반역 도모 사실, 죄인의 추국 내용, 조정의 정령, 관료의 휴가 등도 수록되었다. 관리의 범죄 처리 사실은 물론, 유배자의 해배 소식도 있다. 즉 조보는 하루 동안의 국정 시행 사실이 모두 수록되어 있는 실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8. 조보는 파직된 관료들의 필독서

조보의 배포 범위는 광범하였으나, 이용은 일반 백성보다 중앙의 관청과 전·현직 관리, 그리고 사대부 등 지배층에 한정되어 있었다. 조보체라는 독특한 필체의 한문으로 필사되었기 때문에, 일반 백성은 읽자 하여도 읽을 수 없었으며, 조보를 볼 정도의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 그리고 지배층의 입장에서는 왕권을 강화하고 지배 질서를 유지할 목적으로 필사·반포하였기 때문에, 정보를 독점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조보의 열람은 지방보다 중앙에서 쉽게 할 수 있었으며, 관리들 상호간에 돌려볼 수 있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일반 백성들도 조보를 본 적이 있었다. 선조 29년 전란 중에 민심의 동요를 막을 목적으로 적의 동향을 적은 황신(黃愼)의 서장을 조보에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 조치는 정국의 긴급한 상황을 민간에 알림으로써 민정을 안정시킬 의도로 민간에 유포시킨 사례이다. 이 경우 한문보다는 언문으로 작성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광해군일기』의 편찬 시 일반이 소장하고 있는 조보나 장주(章奏)를 수집하였다는 인조 11년의 기사를 통해서도, 민간 사회에 조보가 유포되었음을 살필 수 있는 것이다. 즉 조보가 대중 매체로서의 기능도 일부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의 관료들은 눈과 귀를 조정의 동향에 맞추고 군주의 동정은 물론, 모든 시행사의 향방에 주목하였다. 잘못을 저질러 사헌부의 탄핵을 받아 파직된 사람은 조정의 동향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컸다. 인사 내용이라든가, 자신이 근무했던 부서의 동향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고, 혹시 자신의 사면이라든가 관직 제수와 관련된 내용이 있을 것인가에 미련을 버릴 수가 없었다. 인사 내용을 비롯한 조정의 시행사에 따라 자신의 거취가 좌우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광해군 10년에는 의금부에 구속된 죄수가 조보와 분발을 받아보아 해당 도사 및 수직 하리 등이 벌 받고, 파수별장과 선전관, 포도군관 등도 파직된 일이 있었다.

조보의 기사가 현직 관리는 물론, 파직되었거나 심지어 옥에 갇힌 사람들에게도 꼭 필요한 정보가 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권력의 맛을 본 사람일수록 조보에 실린 조정의 동향과 정치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컸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러 정황은 조보가 오늘날의 신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음악가들의 아르바이트

음악가라고 하여 무조건 세속과 담만 쌓았던 것은 아니었다. '자유'와 '예술'을 외쳤지만 불안한 '현실'은 생활고로 쪼들렸다. 그래서 음악가들도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자신의 예술 세계가 언젠가는 꽃피울 거라는 믿음만은 꺾지 않았다.

▶ 비평부터 와인 판매까지

작곡이나 연주보다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부업을 선택한 이도 많았다. 이들은 주로 악기나 악보 출판·판매·중개업에 손을 대는 경우가 많았다. '환상 교향곡'으로 유명한 베를리오즈(1803~1869)는 작곡료로 충당되지 않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비평을 했다. 하지만 생활비를 벌기 위해 시작한 비평 활동을 통해 비평이 지닌 힘에 눈뜨게 되었다. '유럽 평론'이라는 잡지에 기고했던 그는 비평을 처음 쓰기 시작했을 때의 기분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런 무기를 내 손에 넣는다고 생각하니 그리 나쁘지는 않다. 여전히 쪼들리는 생활을 하고 있어서 조금이라도 수입을 늘릴 수 있을 것 같아 이 일을 수락하기로 했다."

더 실리적인 부업을 택한 이는 베토벤의 할아버지이다. 그의 이름은 루트비히 판 베토벤(1712~1773).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토벤(1770~1827)과 똑같은 이름이다. 본의 궁정 악단에서 악장으로 일했던 그는 인망도 두터웠다고 한다. 하지만 급료는 충분치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부업으로 와인 판매를 택했다. 이는 베토벤 가문에 경제적 여유를 가져다주었다. 하지만 베토벤의 할머니는 알코올 중독으로 수도원에서 숨을 거두었고, 베토벤의 아버지 요한 판 베토벤(1740~1792)도 알코올 중독에 빠졌다고 하니, 경제적인 문과 함께 비극의 문도 열었던 것이다.

▶ 최고의 두 작곡가가 운영한 이삿집센터

작곡가 스티븐 라이히(1936~)와 필립 글래스(1937~)는 미니멀리즘이라는 기법으로 20세기 음악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이들이다. 미니멀리즘이란 쉽게 말해 선율과 박자를 무한 반복시키는 기법이다. 반복 기법이 긴요하게 쓰인 그들의 음악처럼 두 사람은 아르바이트 인생을 반복하며 살았다. 그러면서도 펜과 오선지를 놓지 않았다.

예나 지금이나 작곡가는 기업이나 재단의 지원금을 수혜하거나, 학위를 취득하여 아카데미에 적을 걸어두어야만 안정적으로 작곡에 매진할 수 있다. 하지만 라이히는 밀스 칼리지에서 석사 과정을 마치고,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 학계와 과감히 작별했다. 그리고 그는 택시를 운전하고 우체국에서 일하며 곡을 썼다. '당신이 원하는 곡'이 아닌 '자신이 쓰고 싶은 곡'을 쓰겠다는 것이었다.

글래스도 마찬가지였다. 음악의 명문 줄리어드 음악원 재학 시절에는 기중기를 몰고 배관공 일을 했다. 어느 날은 예술 평론가 로버트 휴즈(1938~2012)의 아파트에 접시닢이 기계를 설치해주기도 했다. 휴즈는 뉴욕의 저명한 작곡가가 왜 자기 집 부엌 바닥을 기어 다니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라이히와 글래스는 잠깐 동안 뉴욕 첼시에 경량 이삿집센터를 세웠다. 그들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고층 건물의 좁은 계단으로 가구를 옮겨주었다고 한다. 두 대표이자 일꾼이 20세기 음악사를 바꾸고 있는 천재 작곡가라니! 글래스의 이러한 이중생활은 오페라 '사티아그라하'를 위촉받던 1978년까지 계속되었다. 그는 완벽한 성공을 거둔 뒤에는 위스키 광고 모델은 물론이고, 시계 광고를 위한 음악을 쓰는 등 대중스타 못지않은 문화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작곡가로 대성한 뒤에도 자력으로 생활하는 글래스의 이러한 이미지는 청중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한국의 음악가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스타덤에 오르기 전의 무명 시절, 그들도 역시 가난한 고학생으로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했다.

▶ 한국 음악가들의 아르바이트

바이올린 교육의 대모(大母)인 김남윤(1949~, 전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은 어릴 적부터 교육자로서의 '끼'가 충만했다. 서울예고 재학 중에도 아르바이트로 어린 학생들을 가르쳤고, 줄리어드 음악원 재학 중에는 베이비시터와 브로드웨이 뮤지컬 반주자로 일했다. 그러면서도 연습에 주력하여 1974년에 세계적인 콩쿠르인 스위스 티보바 콩쿠르에서 우승을 거머쥐었다.

古典名句

신정근

성균관대 유교문화연구소장

07



화복무문 禍福無門, 유인소소 惟人所召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뒤에 선박 운항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정부를 비롯해서 우리 사회는 그런 염원을 담아 유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지혜를 모았다. 2015년 9월에 돌고래호 전복사고가 일어났다. 탑승자는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다고 한다. 사고가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은 저절로 “구명조끼라도 입었으면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한다. 나아가 “안전수칙을 지켰으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불행이 한번으로 끝나지 않고 거듭하여 반복되고 있다. 이를 두고 “행운은 겹쳐서 오지 않지만 불행은 한꺼번에 찾아온다.”(福無雙至, 禍不單行) 왜 바라는 행복은 하나라도 찾아 올까말까 하지만 불행은 한꺼번에 여러 가지가 닥쳐오는 것일까? 『좌씨전』 양공 23년을 보면 “행운과 불행이 찾아오는 특별한 문(원인)이 없다. 오로지 사람이 초래할 뿐이다.”라고 한다(화복무문禍福無門, 유인소소惟人所召). 우리는 불행이 거꾸 생기면 혹시 신적 존재가 노여워서 그런 일이 생긴다거나 운수가 좋지 못해서 그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위로를 받을지 모른다. 하지만 행운과 불행은 모두 사람이 한 일의 결과로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인과응보이다.

차, 배, 비행기 등은 사람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도 하지만 위험을 안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수칙을 정해놓고 그것을 따르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이 아무리 세세하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용자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다. 세월호 참사만이 아니라 돌고래호 사고도 액운이 낀 것도 아니고 사람이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부터 생겨났다고 할 수 있다.

이 때 언론은 공동체에 큰 재앙이 한번이라도 생겼다면 공동체에서 그 원인을 찾아 감시하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사고가 난 뒤에 지면(紙面)에서 질타와 한탄을 할 것이 아니라 평소에 지면(地面)을 살살이 훑으며 사고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문화평론가 진중권의 누나인 작곡가 진은숙(1961~)은 2007년에 독일 바이에른 국립 오페라극장에 그녀가 작곡한 오페라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선보이며 세계적인 작곡가의 반열에 올랐다. 진은숙은 목사이자 음악애호가였던 아버지로부터 네 살 때부터 기초적인 음악 이론과 악보 읽는 법을 배웠다. 이렇게 보면 부유한 집의 딸 같다. 하지만 피아니스트가 꿈이었던 그녀는 넉넉지 못한 형편 때문에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틈틈이 결혼식 반주 아르바이트를 하여 50원씩 받았다. 밥 한 끼가 약 20원 할 때였으니 당시로서는 꽤 쓸쓸한 벌이었던 것이다.

뮤지컬 음악감독으로 잘 알려진 박칼린(1967~)도 미국에 공연차 들린 고 박동진 명창의 통역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국악과 만나게 되었고, 후에 한국적 색채가 녹아든 창작 뮤지컬 ‘명성황후’ 등에서 음악감독을 맡으며 승승장구했다.

‘학교중’의 작곡가 김메리(1904~2005)는 이화학당(이화여자대학교 전신)을 졸업할 때까지 기상, 식사, 취침, 기도시간을 알려주는 종치기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한다. 이때의 경험이 1948년에 작곡한 ‘학교중’의 밑거름이 되었다.

조선일보의 ‘이규태 코너’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규태(1933~2006)는 오히려 음악을 아르바이트로 삼았다. 1950년대에 연세대학교 화학공학과에 재학 중이던 그는 종로1가에 위치한 음악다방 르네상스에서 디스크자키로 오랫동안 아르바이트를 했다. 르네상스는 작곡가 백병동(1936~), 강석희(1934~)부터 문학평론가 이어령(1934~) 등 내로라하는 예술가들의 집합지였다. 그들이 회고하는 젊은 시절 속의 이규태는 ‘디스크자키 이규태’로 기억된다. 또, 그런 음악적 감수성이 뒷받침되었기에 이규태가 왕성한 문기(文氣)를 뿜어냈던 것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다.

많은 이들이 음악가는 속세와 담을 쌓고 예술에만 매달리는 존재라고 생각하거나, 풍족한 가문의 자제이기에 세상 물정에 초월하여 돈 안 되는 예술만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어떤 음악가에게나 가난했던 젊은 날의 시절이 있다. 어쩌면 그 때 그 시절의 아르바이트는 자신의 예술이 언젠가는 꽃피울 것이라는 믿음에서 택한 임시방편이 아니었을까. ‘이것으로 버티자, 나는 언젠가 높이 날 것이다.’ 라며,



독서치료와 언론중재위원

언론현장을 떠났다가 다시 복귀한 기분이랄까? 묘한 상태가 요즘이다. 처음 취재를 나갔을 때 어색함과 호기심뿐만 아니라 가슴 한 켠에서는 작은 떨림이 있었다. 언론중재위원 소임을 받고서는 그런 느낌은 아니더라도 새

로운 일을 한다는 설렘이 일었다. 이 설렘도 잠시 신문사에 재직 시 피신청인 자격으로 몇 차례 출석한 경험을 떠올리니 오히려 담담한 상태가 되었다. 언론을 떠나면서 시작한 일이 있다. 신문기자를 했으니 'NIE(신문활용교육) 지도사', 평소 책을 가까이 했기에 '독서지도사'와 '논술지도사'가 됐다. 이들 공부를 하면서 '독서치료'라는 분야가 있다는 것을 알고 관심을 갖게 됐고 현재는 독서치료분야의 일만 하고 있다. 이런 공부를 하게 된 연유는 맛별이하는 자식 내외를 위해 손주들을 잘 키워주신 선친을 닮아 내 손주를 직접 가르쳐보고자 하는 마음에서였다.

손주들이 세상에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2012년 4월부터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길지 않은 봉사활동기간이지만 그동안 그늘진 곳에 있는 많은 이들을 만났다. 만났던 분 중에는 하늘나라로 가신 분도 계시다. 김정고시에 합격하여 상급학교에 진학한 청소년도 있다. 형기가 남아 아직 교정시설에 있는 이도 있다. 이분들 모두가 나의 새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준 분들이다.

청주에 있는 한 요양원에는 매주 저를 기다리는 할머니들이 계신다. 이분들은 저를 '노래선생님'이라고 부른다. 처음부터 나를 이렇게 부르지는 않았다. 할머니들에게 그림책과 동화책을 읽어드린 다음 얘기를 나누고 글도 쓰고 그림도 그려보면서 잠시나마 즐겁던 옛 시절을 회상토록 해드렸다. 그리고 연세가 높기 때문에 죽음을 맞는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활동을 했다. 할머니들의 반응을 봐가면서 난이도를 조절하던 중에 노래를 들려드리고 독서치료프로그램을 진행해봤다. 그런데 노래를 들으면서 할머니들이 박수로 장단을 맞추고 노래를 따라 부

르는 등 반응이 뜨거웠다. 그래서 요즘은 그림책과 동화책을 제쳐놓고 1970년대 이전 노래를 골라서 들려드리고 대화를 하고 있다. 나는 이것을 '노래치료'라고 부르고 있다. 노래를 들려드리면서 나름대로의 독서치료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할머니들이 듣고 싶은 노래를 신청 받아서 들려드리다 보니 노래선생님이 됐다. 가끔 약속시간보다 일찍 요양원에 도착하면 거동이 불편하고 치매증상이 있는 할머니들이 각각의 방에 계시다가 지팡이를 짚고 다리를 질질 끌거나 앉은뱅이 상태에서 엉덩이를 밀고 또는 휠체어를 타고 프로그램 장소로 나오시는 것을 목격한다. 이런 광경이 내가 힘이 들더라도 요양원에 꼭 들러서 할머니들을 만나야 하는 이유다. 할머니들을 실망시켜드리지 않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정해진 날에 갈 수 없으면 별도로 날을 잡고 시간을 마련하여 노래를 들려드리고 있다.

교정시설에서 자원봉사로 독서치료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울면서 딸에게 맨몸을 보여주지 못하는 사정을 털어놓던 분이 있었다. 딸이 해달라는 것은 무엇이든 다 들어주었지만 온 몸의 문신 때문에 해수욕장을 팔과 함께 가지 못하는 아버지였다. 문신을 지울 수도 없는 상황이니 딸에게 팔목의 일부만 보여주고 이래서 딸의 바람을 들어줄 수 없음을 아버지로서 아픔을 얘기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알려주니까 환하게 웃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또 고졸검정고시에 합격했다며 자랑하던 재소자에게 프로그램에 참여한 동료들의 박수를 유도하고는 그 열정을 수능시험으로 이어가도록 격려했을 때 얼굴을 붉히던 그 청년은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

언론중재위원으로서 설렘은 없지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봉사활동에서는 그 직책이 독서치료프로그램을 더욱 살찌우고 더 많은 애깃거리를 만들어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사회의 어두운 곳에서 봉사활동을 더 열심히 하면서 처음 맡은 언론중재위원의 소임에 누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당뇨와 여주

당뇨병이란 혈액 속에 혈당이 높아져서 당(糖)이 소변(尿)으로 나오게 되는 증상이다.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음식 속에 있는 탄수화물이 소화효소에 의해 포도당으로 분해되고 혈액 속으로 흡수가 되는데, 당을 잘 조절하지 못하게 되면 당뇨병이 생기게 된다. 한의학에서도 당뇨를 소갈(消渴)증이라 하였는데, 다음(多飮), 다식(多食), 다뇨(多尿)의 증상이 생겨난다고 하였다.

당뇨가 생기면 항상 몸이 피로하고 노곤해진다. 소변이 잦아져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늘어나기 시작한다. 갑작스럽게 살이 빠지기 시작하여 허리 사이즈가 줄어든다. 상처가 생기면 잘 아물지 않고 곧잘 염증이 생긴다. 남성의 경우 성 기능이 약해지게 되고, 여성들도 여성 질환이 더 쉽게 발병한다. 웬지 배가 고프게 되고 이전보다 더 먹게 된다. 시력이 저하되기 시작하여 사물을 볼 때에 다소 뿌옇게 보이기도 한다. 손이나 발이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진다. 목이 마르고 물을 보통 때보다 많이 마시게 된다. 숨을 쉴 때 아세톤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한다. 위장병도 생기기 시작하여 메스껍거나 토할 것 같기도 하다.

보통 운동부족과 불규칙한 식생활, 스트레스와 비만 등의 원인으로 당뇨가 찾아오게 된다. 당뇨는 의원에서 관련된 몇 가지 검사를 해보면 발견할 수 있다. 중년의 나이가 되어 어느 날 갑자기 '당뇨가 있다'라는 말을 듣게 되면, 누구나 마음속에 걱정과 염려와 실망감을 겪게 된다. '아! 나도 이제 나이가 들고 건강이 나빠졌구나! 그동안 운동을 너무 안했어!'라는 자책감과 함께 정신이 번쩍 들게 된다.

당뇨가 찾아왔을 때 우선 필요한 것은 긍정적인 생각과 자세이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코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가 왕성하게 일어나는데, 그렇게 되면 혈당의 수치가 올라가게 된다. 코티솔 호르몬은 불안하고 조급하고 걱정을 많이 하게 될 때 많이 분비가 되는데, 직장생활이 힘들거나 사업과 재정이 어렵고 먹고 살기가 어려워져서 고민으로 죽을 것 같을 때,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왕성하게 분비가 되면서 결국 몸이 상하고 망가지게 되며 당뇨가 찾아오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잘 웃고 잘 울고 모든 염려를 잘 잊어버리는 자세를 가지면 당뇨를 잘 이겨내고 건강할 수 있다.

최근 당뇨에 좋은 음식 중 '여주'라는 식물이 많이 소개되었다. 여주에는 식물성 인슐린이라 할 수 있는 카란틴과 베타카로틴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여주는 쓴 맛 나는 멜론(Bitter Melon)으로 서양에서도 알려져 있는데, 당뇨에도 효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피부건선이나 AIDS, 위장질환, 신장결석, 간의 피로, 상처 치료 등등에 쓰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주로 제2형 당뇨병환자들에게 유익하다고 알려졌다. 또한 여주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려주며, 혈장암을 비롯한 간암, 직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등에도 효과가 있다고 한다. 건선이나 습진 환자에게는 피부에 새살을 돋게 하는 성분이 있어서 피부를 곱게 해준다. 면역 기능을 도와주며 간의 해독과 간염, 간경화, 담낭질환 등에 좋은 효과가 있으며, 과민성대장 질환의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 다만, 여주는 혈당이 낮은 환자나 임신부, 수유모는 금한다.

평소 당뇨가 의심이 되는 분은 꼭 검사를 하시고, 규칙적으로 운동과 절제된 음식으로 건강을 회복하자.





익명보도의 딜레마

필자는 20대에 잠시 모 방송사의 사회부 기자로 근무했다. 사회부 기자의 주된 임무는 경찰서를 취재하여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받은 교육은 무슨 일이 있어도 사건 당사자의 실명은 공개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정치인, 연예인 등의 공인이 아닌 이상 일반인의 이름을 절대로 공개하면 안 된다는 원칙은 위로는 보도국장으로부터 아래로는 수습기자까지 누구도 어길 수 없는 지엄하고도 확고한 지침이어서, 어쩌다 실수로 이를 어긴 기자는 데스크에 불려가 눈물이 쏙 빠지도록 질책을 받아야 했다.

아마 익명보도의 원칙은 지금도 대체로 많은 언론사에서 지켜지는 듯하다. 사건의 당사자가 자신의 실명이 공개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상당을 요청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으니 말이다. 대개의 뉴스나 기사에는 실명대신 사건당사자와 전혀 상관없는 이니셜을 사용하여 'C씨', '김모씨' 등으로 보도하곤 한다.

문제는 그 익명보도 때문에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다른 사람, 다른 업체가 유탄을 맞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다. 최근 언론중재위원회 상담팀에 도움을 요청한 S씨가 바로 이 경우이다. 그녀는 지방의 조그만 소도시에서 다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그 지역의 다방 주인들 사이에 분쟁이 났단다. A다방에서 근무하던 여직원이 독립하여 인근에 B다방을 개업하자 앙심을 품은 A다방의 여주인이 B다방의 여주인과 그녀의 내연남 사이를 이간질 한 것. 결국 B다방 주인의 내연남은 연인의 얼굴에 염산을 뿌리는 테러를 저질렀고 이 사건이 공중파를 타고 방영되었다. 그런데 보도에서 사건의 다방을 'T다방'으로 언급한 것이 화근이었다. 문제의 다방을 지역 주민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전혀 관련 없는 이니셜을 사용하여 보도한 것까지는 좋았으나, 마침 그 도시에 T다방은 딱 하나밖에 없었고 바로 그게 S씨가 운영하는 다방이었던 것. 좁은 지역사회에서 보도의 파급효과는 대단했고, 이후 그녀를 비롯한 다

방의 종업원들은 어디를 가나 "왜 그런 짓을 했느냐", "너네 사장 TV에 나오더라"라는 말을 들어야했다. 원치 않은 스캔들에 휘말린 것도 기분이 나쁘지만 매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니 대체 이 노릇을 어쩌야겠냐며 상담을 부탁해왔다.

그녀의 사연을 듣고 있자니 내 지인이 경험한 유사한 사례가 떠올랐다. 십여 년 전, 서울 모 지방법원의 부장판사가 화식자리에서 동료 여자 판사를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많은 언론사들이 해당 부장판사를 '김 모' 부장판사라고 보도하였으나, 사실 사건의 당사자는 김 씨 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 언론사에서 익명보도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흔하디흔한 성씨인 '김'이라는 성으로 바꾸어 보도한 것. 하지만 누가 알았으랴. 그 지방법원에는 하필 그토록 흔한 김 씨 성을 가진 부장판사가 단 한 명뿐이었고,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김 모 부장판사는 한동안 성추행 판사라는 오명에 시달렸으며 세월이 꽤 흐른 지금도 그 사건의 후일담을 물어보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고 한다.

이러한 경우에 당사자가 취할 수 있는 구제수단은 해당 사건이 자신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정정보도를 신청하고, 이와 더불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아마도 청구를 받은 언론사로서는 다소 억울할 것이다. 실명으로 보도하자니 사건의 당사자가 드러나고, 그렇다고 익명으로 보도하자니 미지의 인물이 피해를 입을지도 모르는, 그야말로 딜레마 아닌가. 하지만 조금은 가혹한 말일지 몰라도 기자가 명예훼손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는, 익명으로 보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과연 그 지역에 T로 시작하는 다방이 있는지, 그 법원에 김 씨 성을 가진 부장판사가 몇 명인지 알아보고, 행여 기사로 인해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사람이 없도록 한 번 더 체크한 후에 보도해야 한다. 때로 그 절차가 번거롭고 성가시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난데없이 아무 상관없는 사건에 휘말려 소문에 시달려야 하는 당사자의 괴로움보다는 가볍지 않을까.



충분한 사실 확인과 반론권 보장은 필수



사례 1.

지자체와 결식아동 급식사업 위탁업무를 체결한 한 사회복지관 급식 배달비를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복지관 관장이 배우자와 지인을 급식배달 유급 봉사자로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후 배달 봉사비를 되돌려 받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모 언론사는 이 복지관에 대해 더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도했다. 복지관 전 직원과 자원봉사자가 제기한 의혹을 기사화했다. 관장이 공익요원을 개인적인 일에 사용했고, 지자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집행 문서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외부에 알리려는 직원을 강제 해고했다는 것이다.

사례 2.

6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모 사회복지법인. 지난해 법인 내에서 거주 장애인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이사장 일가가 각종 횡령 등 불법을 저질렀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 이후 많은 언론사가 이 법인에 대해 추가 취재한 후 보도를 했다. 그런데, 모 언론사는 이 법인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 부실 급식과 인권유린 관련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고 보도하면서, 이사장의 아들이 새 이사로 선임되었다고 보도했다.

장애인 인권 유린을 고발한 영화 '도가니' 이후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사회의 시각은 이전과 달라졌다. 복지법인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도 예전과 달리 더 강화됐다. 미담 기사 일변도였던 뉴스도 비판적인 시각으로 복지단체들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복지단체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문제도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났을지 모른다.

문제가 있다고 알려진 사회복지법인은 충분히 다른 불법이나 탈법을 저질렀을 것이라는 편견이 뇌리에 박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내부 고발자의 제보를 받고 나면 머릿속에는 '이 사람들이 또 무슨 나쁜 짓을 한 거야'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래서 사실 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고, 또 사회복지법 인측의 입장을 듣지도 않고 기사화 하게 된다. 낙인효과다.

앞서 언급한 두 사례도 비슷하다. 조정신청이 된 두 사건 보도는 비슷한 포맷으로 이뤄졌다. 이미 보도를 통해 문제가 있다고 알려진 법인에 대해 제보자들이 추가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근거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기사화했다. 언론사가 사실 확인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 왜 보도하기 전에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느냐, 왜 우리 입장은 반영하지 않느냐는 신청인의 항의 내용도 대동소이했다. 조정대상 보도가 그다지 시급성을 다룰 만한 내용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왜 신청인 입장을 반영하지 않았을까.

심리가 열렸다. 첫 번째 사례 신청인은 심리 중 울음을 터뜨렸다. 조정대상 보도로 인한 억울함을 울음으로 대신했다. 두 번째 사례 신청인은 조목조목 사실관계가 잘못된 점을 지적했다. 첫 번째 사건 담당 중재부는 조정대상 보도에 신청인측의 주장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신청인의 입장을 반론으로 보도해야 한다고 조정안을 제시했다. 다만, 보도 내용 중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은 종결이 되면 추후에 보도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다. 두 번째 사건 담당 중재부도 신청인 측 반론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바 없으므로 이 내용을 정정해달라는 신청인의 요구에 대해서는 무리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사장의 아들이 이사로 선임된 날짜가 잘못 보도됐으므로 이를 바로잡는 정정보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두 사건 다 조정이 성립됐다. 언론사가 충분히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못했고, 신청인의 반론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점이 발목을 잡았다. 고발성 기사를 작성할 때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할 것이 팩트다. 그리고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비판을 받을 대상에 대한 적절한 반론도 반드시 포함해야 온전한 기사가 된다. 그래야 독자들과 시청자들이 신뢰하고, 비판 받는 이도 아프지만 수궁이 가는 보도가 되는 법이다.

“블로그 등을 통해 확산된 보도로 인한 피해구제절차 마련돼야”

— 2015년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국정감사 수감



위원회는 9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를 수감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언론의 보도를 매개하는 포털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위원회가 포털 블로그나 카페 등을 통해 잘못된 보도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포털의 뉴스유통 구조가 왜곡되어 있다며, 뉴스유통 심의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박용상 위원장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께서 인터넷 전파 기사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한 바 있다”며, “위원회는 현재 블로그, 카페 등을 통해 복제된 기사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일괄적으로 수정, 삭제 등의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는 위원회를 비롯하여 25개 수감기관을 상대로 실시됐다.

박용상 위원장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께서 인터넷 전파 기사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한 바 있다”며, “위원회는 현재 블로그, 카페 등을 통해 복제된 기사에 대해서도

2015년도 임시총회 개최

— 결원 부위원장 · 감사, 운영위원 · 시정권고위원 선출



위원회는 9월 7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015년도 임시총회를 열고, 부위원장과 감사를 비롯하여 결원 운영위원 2명 및 시정권고위원 1명을 선출했다.

부위원장에는 서울 제6중재부 김재봉 위원(전 문화일보 수석논설위원)과 광주중재부 조동수 위원(전 광주일보 논설위원실장)이, 감사에는 서울 제1중재부 조재연 위원(변호사)과 대구중재부 송승부 위원(전 대구 MBC 보도국장)이 각각 선출됐다. 운영위원으로는 조동수 부위원장과 부산중재부 오창호 위원(부경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이, 시정권고위원은 김재봉 부위원장이 선출됐다.

2015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심위 임원 선출

— 한위수 심의위원장, 유원욱 부위원장 선출



2015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9월 2일 첫 회의를 열고, 선거기사심의위원장에 한위수 위원(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을, 부위원장에 유원욱 위원(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상임대표)을 각각 선출하고, 최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사과문 게재’ 조치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오는 11월 28일까지 운영되며, 기초단체장 1곳을 비롯해 광역의원 9곳, 기초의원 24곳에서 치러질 선거 관련 기사를 심의한다.

위원동정

COMMISSIONERS

「북한의 선전선동과 로동신문」 출간



이기우 위원(서울제5중재부)은 최근 「북한의 선전선동과 로동신문」(패러다임북)을 출간했다. 이 책은 북한 최고 권력기관인 조선노동당의 기관지이자, 최고 지도자의 유일한 언론(言路)인 「로동신문」의 보도 형태, 선전선동 체계, 세습 담론 등을 심층 분석하고 있다. 또한 전체주의 북한 체제의 속성에 대한 이해와 선전선동의 중요성, 그 중추기관으로서 「로동신문」의 선전 원리와 선전 패턴 등을 설명한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원 사업 선정



김선남 위원(전북중재부, 원광대 행정언론학부 교수)이 9월 8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15년 2학기 대학 신문읽기강좌지원 사업'에 지원하여 선정됐다. 김 위원은 연구개발비와 신문구독료 등을 지원받아 2015학년도 2학기 '시사와 토론' 강좌를 개설함으로써 다양한 사회적 쟁점 관련 뉴스를 심층 분석하고, 학생들이 발표 및 토론을 통해 관련 지식을 축적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국방대 안보과정 교육생 언론 집중교육 실시



위원회는 9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교육생 214명을 대상으로 언론 집중교육을 실시했다.

교육내용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예방 및 구제방법, 조정·중재를 통한 언론분쟁 해결, 사진을 활용한 효과적인 홍보 기법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미디어를 활용한 커뮤니케이션 전략 사례 분석, SNS 등 뉴미디어로 인한 위기 대응방법에 관한 특강을 진행하여 디지털미디어 시대에 적합한 소통 전략을 소개했다.

부산, 양산소재 중학생 대상 교육 실시

위원회는 9월 10일부터 부산 동래의 구서중학교를 시작으로 부산 및 양산 소재 20여 개 교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언론자유·책임과 언론중재위원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자유학기제 미

디어교육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청자미디어재단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해 이뤄졌다. 교육은 올 12월 초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전주지법 판사, 위원회 전북사무소 방문

전주지방법원 판사와 재판연구원이 9월 15일 위원회 전북사무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전주지법이 대법원의 '법원의 날' 제정을 기념해 법관들로 하여금 분쟁해결과 법 집행 관련 기관들을 방문토록 한 '법원은 시민 속으로' 행사의 일환이다.

위원회를 방문한 전주지법 김도균 부장판사는 "이번 방문을 통해 조정이나 재판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대해 좋은 내용을 들었다"면서 향후 법원 방문 특강도 가능하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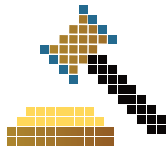
계간 『언론중재』 2015년 가을호 발간

계간 『언론중재』 가을호(통권 136호)가 9월 30일 발간됐다. 이번 호에는 "포털과 공공성의 불편한 동거"를 주제로, 지난 5월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 포털이 제안한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도입과 유사언론 관련 이슈를 진단하는 글을 비롯하여 포털 공공성의 의미, 포털의 뉴스정책과 공공성 제고방안 등 포털 정책과 관련한 논문이 다수 수록되어 있다.





범죄혐의 중 일부 무혐의 처분을 받아 추후보도 및 반론보도로 조정성립



방송사 및 인터넷신문을 포함한 24개 매체는 경찰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모 사회적 기업이 유통기한이 최대 2년이 지난 식재료를 도시락을 만들어 판매하고 각종 정부 지원금을 부정 수령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식품위생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한 부분에 대해서만 검찰이 기소하여 현재 재판 중이지만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도시락을 만들어 판 사실이 없으며, 보조금법 위반 및 장애인고용법 위반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추후보도를 청구했다.

중재부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보도 쟁점으로,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론보도 쟁점으로 정리하여 각 언론사에 사전조정안을 제시했고, 17개 매체는 조정기일 전 추후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해 사건이 취하됐으며, 2개 매체는 추후보도 쟁점만을 보도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나머지 7개 매체는 당사자간 협의가 어려워 추후보도 쟁점만을 방송하는 내용으로 중재부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여 이에 양 당사자가 동의했다.

‘폭리’는 주관적인 평가로서 정정보도 대상 아니지만, 반론보도문 게재로 합의

C방송은 신청인 지자체가 위탁 운영하는 오토 캠핑리조트가 성수기 숙박요금을 평소보다 최대 두 배 넘게 올려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 지자체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된 ‘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므로 기준 및 근거 없이 요금을 인상하여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며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심리결과, 중재부는 “폭리”는 주관적인 평가이고, 보도의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 없어 정정보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적정요금에 대한 부분은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숙박요금의 근거에 관한 신청인 지자체의 입장을 반론보도하는 선에서 합의할 것을 권유했다. 이에 양 당사자는 중재부의 권유를 수용해 조정이 성립됐다.

법원 판결문을 잘못 해석한 보도, 정정보도로 조정성립

A 인터넷 매체는 B 언론사 소속 기자 해고 무효 소송 관련 대법원 판결을 보도하면서, B 언론사가 해당 기사를 해고할 당시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잘못이 있고, 해당 기사가 트위터 글을 게시한 행위가 표현의 자유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 B 언론사는, 해당 기자 해고 통지 당시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해고 통지에 해고 사유와 관련된 구체적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해고통지라고 보기 어렵다고 대법원 판결문에 적시되어 있으며, 트위터 글 게시행위는 표현의 자유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는 취지로 판결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심리결과, 중재부는 대법원 판결문을 취재기자가 오해했다고 판단, 판결 내용을 바로잡는 정정보도 게재를 권고했다. 이에 양 당사자가 중재부의 조정안을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범죄혐의 보도한 전문지, 무혐의 처분 인지 후 추후보도

산업 관련 전문지 D는 신청인이 중국산 제품을 수입한 뒤 산업부 신기술 인증을 받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고, 몇몇 공기업과 해당 제품을 비싼 가격으로 납품하는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혐의로 검찰에 피소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검찰이 관련 혐의를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며 추후보도를 청구했는데, 피신청인은 고소인이 검찰 처분에 항고할 수 있고, 신청인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자칫 추후보도가 결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된 뒤 결과에 따라 보도하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청인은 조정대상 보도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신속한 추후보도가 필요하다라고 반박했다.

심리결과, 중재부는 추후보도청구는 법률로 정해진 권리인 만큼 피신청인이 추후보도를 게재하되, 향후 이 사건과 관련된 사법기관의 절차가 모두 종결한 후 결과에 따라 자유롭게 후속보도를 하는 선에서 합의하도록 양 당사자에게 권유했고, 양 당사자가 중재부 권유를 수용해 조정이 성립됐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론  사람」을 읽고 나서
느낀 점 등을
성명, 연락처와 함께
이메일(pac_news@pac.or.kr)로
보내주세요.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김기학-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온 풍요의 계절 가을인 만큼 우리의 마음도 행복과 사랑으로 풍성해졌으면 합니다. <역사 속 언론>코너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 조보에 대해서 다루어 주었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은 한성순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 이전시대에도 신문과 같은 역할을 한 조보가 있었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배층이나 학자 등 양반 위주의 소식을 전했던 만큼 수평적인 정보가 아닌 수직적인 정보라는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신문과 같은 언론이 군주제에서도 존재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나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언론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조보라는 역사적 사실이 말해주는 듯합니다. 그래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공평 정대한 언론을 위해서 노력해주시길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김연태-

우리나라 언론의 시작은 '신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이야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다양한 언론을 접할 수가 있지만 예전에는 신문이라는 매체가 가장 쉽게 언론을 접하는 국민들의 수단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과거로 돌아본 신문과 언론(가칭 : 타임머신 언론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코너를 하나 만드는 것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 1997년 8월의 신문에 보도된 모습과 현재 변화된 모습을 비교해서 보여주는 내용을 「언론  사람」에 넣는 것은 어떨까 하고 제안을 해봅니다.



소통하는 창,
언론중재위원회 SNS

언론중재위원회
블로그 개설





여러분과 친구가 되고 싶어요!





 pacblog.kr NEW
 facebook.com/pacnews
 twitter.com/pac_news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새로운 언론피해구제제도

- 언론중재법 개정안 쟁점과 해설 -

| 일 자 | 2015. 10. 13.(화) 14:30~16:3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



| 진행 순서 |

14:30~14:40 **축사 및 인사말**

- 축 사 : 신성범 (국회의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문재완 (한국언론법학회 회장)
- 인 사 말 : 박용상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14:40~15:30 제1부 주제발표

- **기조발표 : 디지털 시대, 언론중재법 과제와 전망**
김수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중재부장)
- **인터넷 상의 새로운 언론피해 양상**
강현석 (언론중재위원회 조사팀장)
- **언론중재법 개정안 해설**
양재규 (언론중재위원회 교육콘텐츠팀장, 변호사)

15:40~16:30 제2부 토론

- 사 회 : 이상원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 중재위원)
- 토 론 자 : 김은태 (네이버 법무실 부장)
윤영철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이병선 (카카오 CR팀 이사)
조현욱 (법무법인 도움 대표변호사)
조형래 (조선일보 디지털뉴스본부 취재팀장)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문의 : 언론중재위원회 기획팀 Tel 021397-3023 E-mail hanhyeyeon@pac.or.kr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